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○ 각급 법원의 장은 법관 사무분담의 투명화, 민주화를 위하여 사무분담에 관한 사항의 자문기구로서 사무분담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각급 법원의 장은 사무분담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한 사무분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제3항 신설)

○ 사무분담위원회의 설치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 법원의 내규로 정함(안 제4조제4항 신설)

4.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5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규칙 제　　호　　2020. . . 공포

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각급 법원의 장은 사무분담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한 사무분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④ 사무분담위원회의 설치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 법원의 내규로 정한다.

부　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사무분담) ① (생 략)	제4조(사무분담) ①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③ 각급 법원의 장은 사무분담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한 사무분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<신 설>	④ 사무분담위원회의 설치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 법원의 내규로 정한다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	
연락처	(02) 3480-1245